

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

****참여전,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 바이오헬스 언택트 일자리 박람회

2020 바이오헬스 언택트 일자리 박람회

2020년 9월 10일(목)~9월 16일(수) 까지
서류 및 상담접수 : 8월 24일부터 접수 진행

“꿈꾸는 청년,
바이오헬스 일자리를
잡(JOB)다!”

제약·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바이오헬스를 이끌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대 상 바이오헬스 산업 취업 희망자
주요프로그램 2020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 전문 홈페이지 www.biojobfair.co.kr을 통한 지원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주최(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후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일자리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대한약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일시	2020년 9월 10~16일(수)		
장소	몬라인 취업박람회		
참가대상	바이오헬스 산업 취업 희망자		
행사구성	추후공지 바이오헬스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 참조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업신청기간	9월6일(일)까지 마감	개인신청기간	8월24일~
문의처	02-6085-8297	FAX	--
담당자		E-MAIL	biojobfair@naver.com
사이트(출처)	http://www.biojobfair.co.kr/main/main.php		

취업박람회 행사 참여전 개최여부를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잡815

□ 청년 일자리박람회 & 미래일자리 컨퍼런스



청년드림

JOB

콘서트

청년 일자리박람회 & 미래일자리 컨퍼런스

2020. 9. 21.(월)~9. 25.(금)
온라인 & 킵텍스
 온라인 입사지원 및 사전 접수
www.gyjobcon.kr



온라인 채용 | 화상면접
 온라인 참가기업 입사지원 (9.3~9.25.)
 화상면접 (9.22~23. | 킵텍스)

미래일자리 컨퍼런스
 온라인 라이브 강연 (9.22~23.)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 일자리의 미래
 언택트에 들어가는 취업과 채용

대기업 공채 상담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온라인 설명 및 Q&A

취업컨설팅 | 일자리정보
 언택트 기술과 취업의 만남 및 일자리 정보

주최:  고양시

문의: www.goyang.go.kr/jobs

후원:  고용노동부

031-8075-3665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

일시	2020년 9월 21일(월)~25일(금)		
장소	온라인(www.gyjobcon.kr) 및 화상면접		
참가대상	청년층 구직자 및 일자리분야 관계자		
행사구성	온라인 채용, 일자리 컨퍼런스, 대기업공채상담, 일자리정보제공		
주최	고양시,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주관	후원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양고용노동지청, 김포시, 파주시, 제1군단, 청년재단		
기업신청기간	8월 12일(수)~9월 3일(목)	개인신청기간	온라인 입사지원/사전 등록-9월 25일(금)
문의처	02-548-8229	FAX	070-4275-5685
담당자	이경호 주임	E-MAIL	fair@insamansa.co.kr
사이트(출처)	http://www.gyjobcon.kr		
취업박람회 행사 참여전 개최여부를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잡815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

-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제 활용현황 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위해 최근 5년간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전환형 시간제) 활용실적을 발표하였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시간제로 전환하여 근무하면서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사업주에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으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8.27. 개정)

** 시행시기: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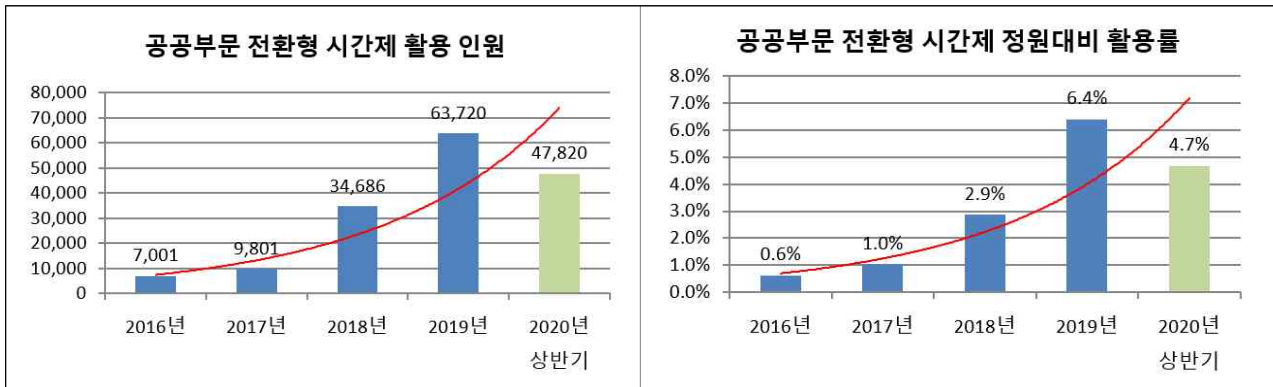
- 이번 발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제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점에서 민간부문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졌다.
-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 공공부문 조사대상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총 840개 기관(’20년 기준)으로, 매년 분기별로 직접 제출한 활용실적 자료를 토대로 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인원과 정원대비 활용률은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 2019년은 활용인원(활용률)이 63,720명(6.4%)으로 100명당 6.4명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 2016년도 대비 3년 만에 활용인원은

9배 이상(활용률은 10배) 증가했다.

* '16년도 활용인원 7,001명(활용률 0.6%) → '19년도 활용인원 63,720명(활용률 6.4%)

- 2020년은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활용인원의 75.0%(활용률의 73.4%) 활용실적을 보여, 연말에는 전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활용률(정원대비 활용인원 비율) : '16년 0.6% → '17년 1.0% → '18년 2.9% → '19년 6.4% → '20년 상반기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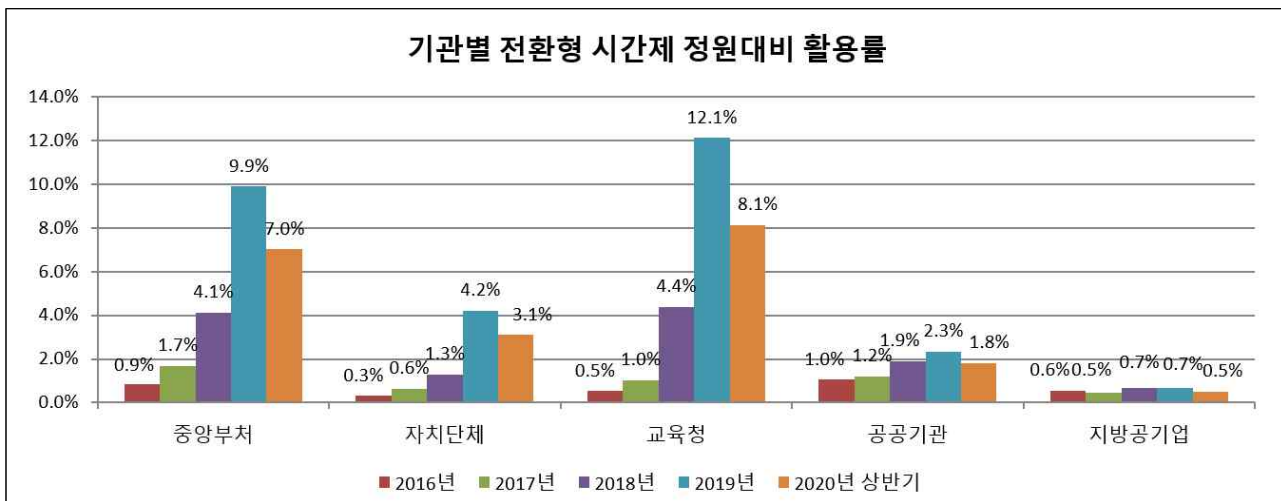


○ 기관별 활용도에서는 **교육청**이 가장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였고, 다음으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 '19년 : 교육청(12.1%) > 중앙부처(9.9%) > 자치단체(4.2%) > 공공기관(2.3%) > 지방공기업(0.7%)

* '20년 상 : 교육청(8.1%) > 중앙부처(7.0%) > 자치단체(3.1%) > 공공기관(1.8%) > 지방공기업(0.5%)

- 중앙부처, 교육청의 경우 2018년 이후 활용실적이 크게 증가한 반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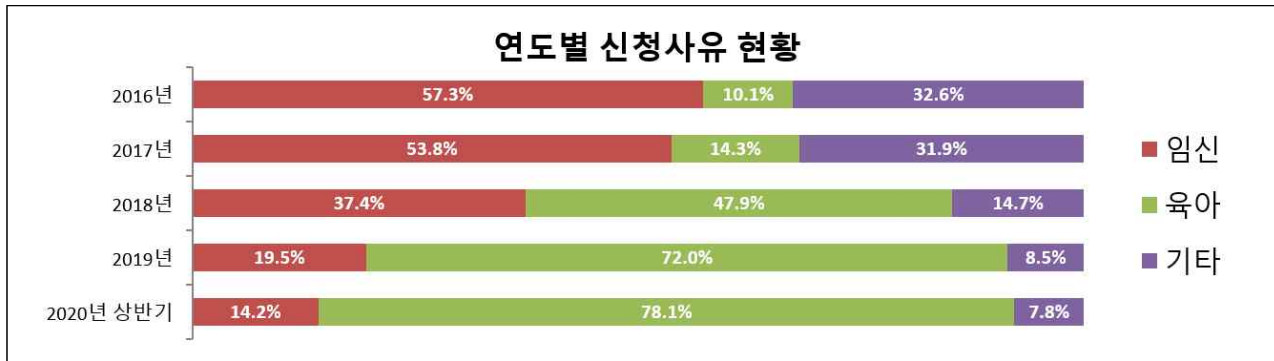


○ 신청사유로는 2017년 이전에는 '임신' 사유가 가장 많았으나, 2018년 이후 '육아' 사유가 크게 증가했으며,

-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녀돌봄 수요가 급증한 2020년 상반기의 경우 '육아' 사유(78.1%)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 ('16년) 임신(57.3%) > 기타(32.6%) > 육아(10.1%)

* ('20년 상) 육아(78.1%) > 임신(14.2%) > 기타(7.8%)



- 한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민간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 ▲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 ▲ (임금감소보전금) 주당 25~35시간 40만원, 15~25시간 60만원 한도
 - ▲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대규모 기업 30만원, 중소·중견기업 80만원
-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사업주, 사회 모두에게 코로나19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개발을 하는 등 일·생활 균형을 이루고,
 -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휴업 대신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다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용과 경영을 유지할 수 있으며,
 - 사회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근무환경의 혼잡도 및 밀집도를 낮추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 **항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새로운 근무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 “기존의 장시간, 경직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하여 뉴노멀 근무방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병렬 사무관(☎ 044-202-74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 (주요내용)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 (추진경과)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도입
*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19.8.27.)하여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신설
- (지원사업) 워라벨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지원금)과 연계, 사업주 지원
* 간접노무비 월20만원(중소·중견),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24~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월30~60만원

□ 주요 내용

- (신청 사유)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만 55세 이상), 학업
- (거부 사유) ①근속기간 6개월 미만, ②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③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 ④단축 종료 후 2년 未 경과 등
- (단축 기간) 기본 1년 이내, 추가 2년 연장(총 3년, 연장 1회 가능)
* 학업 사유는 총 단축기간 1년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근로 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 및 금지*, 근로시간 단축 후 동일직무 복귀, 단축기간 중 연장근로 금지**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 (시행 시기) '20년 300인 이상·공공기관 → '21년 30~299인 → '22년 30인 미만

< 단축 사유별 활용 및 기대효과 >

단축 사유	활용	기대 효과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병	⇒ 가족친화문화 조성, 고령사회 대비
본인건강	질병, 부상 등 신체 및 정신건강 회복	⇒ 업무 집중도 향상, 경력단절 방지
은퇴준비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준비	⇒ 점진적 퇴직, 인생 3모작 준비
학업	정규교육, 근로자 자율적 직업훈련	⇒ 평생학습 보장, 업무 생산성 향상

☐ **개요**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질병, 은퇴준비, 학업 등)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①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 단축기간 만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근무시간 단축 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지원내용)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금 인상(3.1.~12.31. 단축분) >

지원내용	월 지원수준		지원대상
	종 전	인 상(한시적*)	
임금감소보전금	15~25시간: 40만원 25~35시간: 24만원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40만원	15~25시간: 60만원 25~35시간: 40만원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60만원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월 40만원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 60만원 이내 그외: 30만원 이내	중소: 80만원 이내 그외: 30만원 이내	모든 기업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한시적 지원수준 인상) '20.3.1~12.31.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에 한하여 인상된 지원금 적용

- ☐ (지원절차)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매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지급

- ☐ (문의)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참조